

의안번호	2217032
의 퇴 인	김건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계번호	26D1031

기후외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이 규정하는 기후외교위원회 운영 및 기후외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1,900만원, 2031년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 3,500만원(연평균 8,700만원)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기후외교심의위원회 (안 제6조)	54	54	54	54	54	270	54
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9조)	165	—	—	—	—	165	33
합 계	219	54	54	54	54	435	87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의 책무)	국가는 기후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	
2	안 제6조(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)	외교부장관은 기후외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	
3	안 제7조(기후외교위원회)	기후외교 정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외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(제1항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－ 재정경제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－ 기후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
4	안 제8조(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등)	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안보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·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	
5	안 제9조(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등)	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	
6	안 제10조(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)	국가는 기후외교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국가의 책무)	×	국가의 기후외교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2	안 제6조(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)	○	-
3	안 제7조(기후외교위원회)	○	-
4	안 제8조(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등)	×	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5	안 제9조(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등)	×	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후외교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 및 구체적인 지원 부문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움
6	안 제10조(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)	×	국민에 대해 기후외교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7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(외교부장관)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본 추계에서는 10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
 - 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정경제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 등 공무원과 기후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
 - 유사 위원회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225,000원, 회의개최 횟수는 월 2회,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가정함
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그 중 12명의 관련 정부부처 장관,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위

- 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위원 중 2분의 1인 10명을 외부위원으로 가정함
-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안전 검토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일하다고 가정
 - 안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실이 기존에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6,5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
 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, 추계기간 중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
 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후외교위원회의 운영(안 제6조)

- 위원회의 10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2만 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연 24회(월 2회) 회의를 한다고 가정하면,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연간 5,400만원임
- 안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7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기후외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후외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 (안 제6조)	54	54	54	54	54	2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9조)

- 국무총리실의 제4차 국제관계협력 기본계획(2026년)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준용하면,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,500만원임

[표 3] 기후외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9조)	165	-	-	-	-	1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이 규정하는 기후외교위원회 운영 및 기후외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1,900만원, 2031년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 3,500만원(연평균 8,700만원)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기후외교위원회 (안 제6조)	54	54	54	54	54	270	54
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9조)	165	-	-	-	-	165	33
합 계	219	54	54	54	54	435	87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